

[별첨 1] 헌법소원심판청구 개요

□ 청구인 : 일반시민 등 40,025명,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 및 큰돌고래 54개체

- 해녀, 어업인, 유통업자, 염전업자, 수산식품업자, 횃집 등 요식업자, 해양관광시설 및 해양스포츠시설 운영자, 농업인 등 관련 종사자들
- 낚시, 스쿠버 다이빙, 서핑, 바다 수영, 기타 해양스포츠 등을 즐기는 시민들
- 먹거리, 암 등 각종 질환, 임신출산 등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
- 국내 거주 외국인들
- 밍크고래, 큰돌고래, 남방큰돌고래 등 개체특정이 가능한 고래

□ 피청구인 : 대한민국 대통령 외 7

□ 청구취지

1. 피청구인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하여 다음 각 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청구인들의 생명권,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환경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다.

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반대성명 발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잠정조치의 신청 등 일체의 외교적 조치

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전수조사 조치

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국민들의 참여 보장

2. 피청구인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하여 한 다음 각 행위는 청구인들의 생존권,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환경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하거나, 위헌임을 확인한다.

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관련한 피청구인들의 대국민 정보제공행위로서,

- ①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카드 뉴스 배포행위
- ② 2023. 7. 7.자 유튜브 방송 행위 및 2023. 7. 19.자 유튜브 방송 행위
- ③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페이스북 홍보 행위
- ④ 2023. 6. 15.부터 매일 진행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관련 정부 일일브리핑
- ⑤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2023. 7. 27. 부산 자갈치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명한 우리 국민은 방사능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 이라고 발언한 행위

나. 피청구인들의 소극적 방사능 검사로서,

해양환경방사능검사 지점 108개 확대 및 수산물방사능 관련 생산단계 검사장비 24대 추가, 유통단계 검사장비 6대 추가, 일본 활어차 담수된 해수 분석을 연간 360대로 확대한 행위

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불충분한 조사, 대응 및 정보 제공행위로서,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23. 7. 7.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 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2022. 3. 11.부터 IAEA 검증(확증 모니터링) 과정 참여 및 2023. 7. 7.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 ③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23. 5. 21.부터 같은 달 26.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 파견 및 그 결과 발표 행위

□ 청구의 주요 내용

○ 외국인과 자연물의 청구인 적격의 문제

-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문언인 “국민”의 범위를 넘어 기본권 주체성을 넓게 인정하고 있음
- (외국인)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등)
- (자연물)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수호, 소수자 보호기

능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해석이 요구된다는 점, 자연물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하는 해외 판례 및 지구법학적 헌법해석론 등에 따라 고래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 됨

■ **참고자료: 해외판례상 자연물의 권리주체성 인정 추세**

- “지구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이 지구에 속해 있다는 기본전제에서 시작된다 (중략) 우리가 지구를 함께 공유하는, 그 존재만으로 보호의 가치가 있는 다른 살아있는 유기체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콜롬비아 헌법재판소)
- “이는 동물에게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 있고, 지각하는 존재로서 법인격을 가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종에 적합한 환경에서 나고 살고 자라고 죽을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느냐의 문제다” (아르헨티나 멘도사주법원)
- “강과 호수는 오염되지 않을 내재적 권리와 스스로의 활발한 생태 시스템을 재생할 권리가 있으며, 법인격체에 게 해진 손해는 인간에게 가해진 손해와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한다” (인도 우타라칸드주법원)

- 국내에 서식하는 고래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고래들의 후견인으로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참여

○ **심판의 대상**

① **공권력의 불행사**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반대성명 발표,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의 신청 등 일체의 외교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
- 후쿠시마 오염수투기에 대응한 독자적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
-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전수조사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
- 오염수투기에 대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제공 및 시민참여보장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

② **불충분한 공권력 행사**

- 대국민 정보제공행위
- 소극적 방사능 검출검사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불충분한 조사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과학기술적 검토보고
 - IAEA 검증과정 참여 및 KINS 검토보고서 발표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시찰단 파견 및 그 결과 발표

○ 피청구인들의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

①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의무의 존재

- 헌법, 헌법해석, 국제조약 및 국내법령에 따라 방류를 방지하기 위한 외교적 보호 조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전수조사 및 독자적 환경영향평가,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참여권 보장절차 마련 등 헌법상 작위의무가 도출됨

- **(명문규정 및 헌법해석)** 헌법 전문(미래세대의 자유와 행복),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명권, 기본권 보호·보장의무), 헌법 제12조(적법절차의 원칙), 헌법 제15조(직업의 자유), 헌법 제21조(알 권리), 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 헌법 제32조(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헌법 제34조 제6항(재해예방의무), 헌법 제35조 제1항(환경권, 환경보전의무), 헌법 제36조 제3항(건강권, 보건권), 헌법 제37조 제1항(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 안전권 등) 헌법 제66조 제2항(영토보전의무), 헌법 제120조 제2항(자원 보호의무), 헌법 제123조 제1항(어업 보호의무) 등

- **(국제조약)**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등 국제인권규약(생명권, 건강권, 물에 대한 권리),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 등

※ 해양환경관리법 제4조에 따라 해양오염과 관련하여서는 국제협약을 우선적으로 적용

- **(국내법령)** 환경정책기본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법 등이 규정하는 책무, 사전예방의무 등

② 공권력의 불행사

- 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의무 위반

- 외교적 조치로서 오염수해양투기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음● 오히려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
-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 는 입장 표명
- 사실상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지 않겠다는 방식으로 외교 행위를 하고 있음

- 국제분쟁절차로 나아가야 할 의무 위반

- 일본의 국제해양법협약 위반 행위에 대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에 대한 제소, 잠정조치 신청으로 나아가지 아니함
- 일본의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 위반 행위에 대하여 중재재판부 구성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 일본의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협의·중재·분쟁 의뢰 절차로 나아가지 아니함

-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할 의무 위반

-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에 대하여 독자적인 방사선환경영향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전수조사를 해야 할 의무 및 삼중수소 조사를 해야 할 의무 위반

-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 대표 시료만을 채취·분석하는 방식으로 해당 제품의 적부를 판정
- 최초 검사에서 미량의 방사능 수치가 검출되어도 삼중수소는 분석하지 않음

- 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의무 위반

- 법률상 시행할 수 있는 국민투표나 공론화 절차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고려하지 않음
-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 및 결정 위한 공적 절차를 행정적으로 추진하지 않음

③ 기본권의 침해

- 침해되는 기본권

-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근로의 권리, 안전권, 알 권리

-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박탈한 것으로 의무위반 그 자체로 기본권을 침해
- 의무위반에 대한 헌법적 정당화 근거도 없기 때문에 의무위반 그 자체로 기본권을 침해함

- 설사 피청구인의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회복될 수 없는 기본권의 침해를 야기한다는 점, 피청구인들의 작위의무 이행으로서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과 같이 침해되는 기본권의 중대성, 구제의 절박성 등을 고려했을 때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아야 함

○ 피청구인들의 부적절하고 불충분한 조치로 인한 기본권 침해

① 피청구인들의 부적절하고 불충분한 조치

- 일본이 제공한 자료와 데이터에 의존하고, 오염수의 안정성 홍보 등 해양투기를 지지하는 취지의 브리핑과 SNS 활동을 통해 의사결정에 부당히 개입
- 피청구인들의 방사능검사는 그 범위나 내용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짐
-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진행한 시찰단 판견 및 과학적 기술적 검토 등은 정책결정에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이터의 활용, 기초사실의 누락, 불투명한 과정 속에 이루어짐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 보호를 방기하는 결론을 내림

② 침해되는 기본권

-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근로의 권리, 안전권, 알 권리

③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에 관한 완화된 심사기준(과소보호 금지원칙)에 따르더라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것이 명백하므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음
- 즉 피청구인들은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

○ 적법절차의 원칙 위배

- 생명, 신체의 안전 등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해 관계를 충분히 방어, 대변할 수 있어야 하므로 참여절차의 보장이 강하게 요청됨
- ※ 참고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국 및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적 형성이 요구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¹⁾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들은 시민들이 정부의 입장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를 입법적, 행정적으로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적법절차원칙을 위배

1) BVerfGE 53, 30/59ff

하여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임